

식약처, 관세청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 관세청 ‘직구 해외식품등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 자가소비를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 유통행위 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으며,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 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8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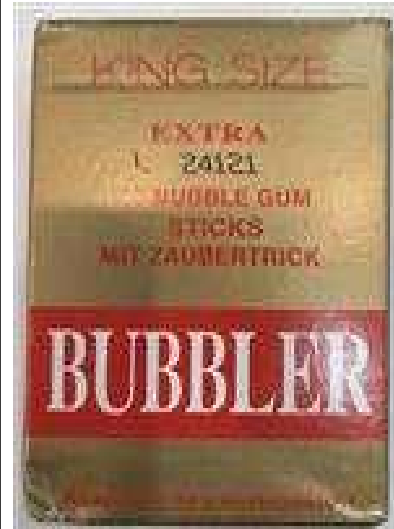
- <붙임> 1.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
2. 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남백상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최충렬 (043-719-6259)
담당 부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책임자	과 장	정지은 (042-481-1160)
		담당자	사무관	황호면 (042-481-3249)



붙임 1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



외국 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

아래와 같은 수입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돼요

1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은 식품



2 한글표시사항(스티커)이 없는 식품



3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판매하는 식품의 소비기한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이 진열·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반입한 식품



5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국내 반입한 식품



※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제4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